

## 여성노인의 인권: 나이듦과 젠더의 교차

Human rights of older women: the intersection between ageing and gender

(July 16, 2021)

클라우디아 말러,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

(Claudia Mahler,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

###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II. 나이듦과 젠더의 교차(Intersection between ageing and gender)

III. 여성 노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older women)

A. 교육과 평생 학습(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 소득보장, 사회적 보호 및 재산권(Income security, social protection and property rights)

C. 건강권(Right to health)

D. 자주성과 독립성(Autonomy and independence)

E. 장기 요양과 지원(Long-term care and support)

F. 폭력, 학대 및 방치(Violence, abuse and neglect)

G. 갈등 및 긴급 상황(Conflict and emergency contexts)

IV. 여성 노인의 권리 증진 및 보호(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older women)

A.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Legal and policy frameworks)

B. 여성 노인의 참여, 기여 및 자기 통제(Participation, contribution and agency of older women)

V. 결론 및 권고 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III. 여성 노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

####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older women)

16. 노년기의 젠더 관련 불평등은 삶의 주기에 걸쳐 누적되고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에 의해 악화한 불이익의 결과이다. 즉, 많은 여성 노인은 그들의 권리를 거부당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노인과 여성 모두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한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젠더로 인한 격차가 한 세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성은 계속해서 불리한 위치에서 만년을 맞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A. 교육과 평생학습(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17. 교육, 훈련 및 평생 학습에 대한 접근은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교육적 성취와 인지적 활동은 건강한 나이들에 중요하며 치매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sup>11</sup> 그럼에도 성인 학습은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속하며,<sup>12</sup> 특히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교육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4(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에 따라 개발된 목표(targets)와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삶의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HRC/39/50, para. 31).

<sup>10</sup>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sup>11</sup> See [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ementia](http://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dementia).

<sup>12</sup>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ubstantive inputs on the focus area ‘Education, training, life-long learning and capacity-building’”, working document submitted to the tenth session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15–18 April 2019.

18. 젠더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젊은이에 대한 문맹률 퇴치에서 세계적인 성평등(gender parity)이 거의 달성되었는데, 이것은 미래 세대의 여성 노인에게 고무적이다. 반면, 현재 65세 이상의 여성 세대는 27퍼센트가 기본적인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전 세계 문맹 노인의 3분의 2가 여성이다.<sup>13</sup>

19. 젠더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gender divide)는 특히 여성 노인 사이에서 두드러진다.<sup>14</sup> 돌봄을 위해 유급 노동력에서 제외된 시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기량(new technologies and skills)에 덜 노출되는 것도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성 노인은 또한 남성보다 금융 문맹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sup>15</sup> 이러한 교육 격차는 여성 노인이 사회적으로 포용 되고, 독립적이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20. 더욱이, 여성 노인은 접근성, 불충분한 디지털 인프라 및 기량, 가격, 등록 연령 제한 또는 돌봄 책임 문제와 같은 교육, 훈련 및 평생 학습 분야에서의 장벽에 직면한다. 평생학습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삶에 걸쳐 축적된 젠더에 따른 교육 격차에 의해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가 자주 여성 노인을 "교육과 직업 훈련을 하기에는 영리 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처(non-profitable investments fo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로 간주하는 등 연령주의적 태도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sup>16</sup>

<sup>13</sup>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Statistics, Fact Sheet No. 45 (September 2017).

<sup>14</sup>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Bridging the digital gender divide: include, upskill, innovate" (Paris, 2018); see also Annapurna Ayyappan and Samah Shalaby,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The gender digital divide: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digital learning", 8 March 2021.

<sup>15</sup> Submission by HelpAge International.

<sup>16</sup>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7 (2010), para 19.

## B. 소득보장, 사회적 보호 및 재산권

### (Income security, social protection and property rights)

21. 많은 여성 노인은 경제적 필요, 돌봄 제공에 대한 기대와 요구, 의존을 피하고 활동적이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유급 및 무급 업무를 맡고 있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13.2퍼센트로 남성의 28.2퍼센트에 비교된다. 저소득 국가에서 이러한 비율은 여성 33.4퍼센트, 남성 56.4퍼센트로 증가한다.<sup>17</sup> 노년의 노동은 여성 노인에게 혜택과 불이익 둘 다 준다. 한편으로 이것은 재정적 독립성을 높이고, 가구 내에서 성취감과 지위를 제공하며, 인지적 이점(cognitive advantages)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노년의 노동은 열악한 근무 환경, 차별과 학대 등의 노출,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여성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나이가 들면 노동시장에서의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해진다. 많은 나라에서 젠더에 따른 임금 격차는 지속되며 심지어 나이가 들며 증가하는데, 이것은 정년이 가깝거나 그 이후인 여성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젠더에 따른 임금 격차는 네팔의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거의 50퍼센트, 포르투갈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이다.<sup>18</sup>

23. 여성 노인의 능력과 활동이 낮다고 인식되면서 고용에서의 차별이 자주 보고된다. 여성 노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특히 영향을 받은

<sup>17</sup>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dataset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sex and age. Available at: <https://ilostat.ilo.org/data>.

<sup>18</sup> ILO, *Global Wage Report 2018/19: What Lies Behind Gender Pay Gaps* (Geneva, 2018), figure 35, pp. 82–85.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sup>19</sup>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돌봄을 위해 경력 단절을 겪은 후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려는 여성 노인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다. 일부 국가는 기업에 면세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교육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했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에서는 시골과 외딴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노인에게 가정에 기반한 지원과 돌봄(home-based support and care)을 제공하기 위해 50세 이상의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sup>20</sup>

24. 세계적으로,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이 파트너, 손녀와 손자,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정년 전에 취업 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둘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많은 여성 노인은 또한 조부모가 중간 세대 없이 손녀, 손녀와 함께 사는 조손 가족(skipped-generation households) 형태로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서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와 같이 젊은 여성이 조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찾아 이주하는 경우가 있다.<sup>21</sup> 아프리카에서는 할머니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위기의 결과로 고아가 된 손녀, 손자들을 돌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2</sup> 특히, 사회 보호 시스템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제공자가 여성 노인인 경우 이러한 책임은 그들의 제한된 자원과 수입에 부담이 된다.

25. 노동 참여가 낮은 것에서 오는 누적된 불리함, 젠더로 인한 임금 격차,

<sup>19</sup> Submission by AGE Platform Europe; see also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Gender equality in ageing societies”, Policy Brief No. 23 (March 2020), p. 22.

<sup>20</sup> Submission by Croatia.

<sup>21</sup> Submission by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Global Alliance Committee on Gender and Ageing.

<sup>22</sup> Submissions by the Stephen Lewis Foundation and the Centre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retoria.

돌봄으로 인한 경력 중단, 시간제와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인 일 등은 여성이 연금 보험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여성이 받는 연금 혜택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26. 유럽연합의 경우 평균 성별 연금 격차는 37.2퍼센트로 추정되며(see [A/HRC/47/36/Add.1](#), para. 15), 이는 14.1퍼센트의 성별 임금 격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sup>23</sup> 여성의 연금에의 권리에 관한 차별적 법률과 관행의 지속은 상황을 악화시킨다.<sup>24</sup> 여성에게 해당되는,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는 경우는 여성들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줄임에도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에서 여전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경제 절반 이상에서 여성의 정년퇴직 연령이 남성보다 최소한 5년 더 낮다.<sup>25</sup>

27. 기여연금제도(contributory pension systems)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하며, 납부금과 혜택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킨다. 민간연금제도는 만근의 급여가 높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여성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떨어질 수 있다.<sup>26</sup> 연금 관련 사항은 이주 여성 노인에게 특히 불리한데, 타국에서의 근로 기간과 저임금의 불규칙한 비공식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7</sup>

28. 돌봄 기간 중 육아와 일을 양립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없을 때 공적 연금보험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보기 위해

<sup>23</sup> See [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equal-pay/gender-pay-gap-situation-eu\\_en#facts-and-figures](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equal-pay/gender-pay-gap-situation-eu_en#facts-and-figures).

<sup>24</sup> Frances Raday, *Economic Women, Gendering Inequality in the Age of Capital* (Routledge, 2019), pp. 107–108.

<sup>25</sup> World Bank Group,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1* (Washington, D.C., 2021), p. 14.

<sup>26</sup> Submissions by Just Fair, the Women's Budget Group, Backto60 and the National Pensioners Convention (Women's Working Party).

<sup>27</sup> Submission by the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UN-Women).

20년간 일하지 못한 몰도바 여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에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sup>28</sup> 에콰도르의 무급 가사 노동자의 경우에도 같은 권리가 침해되었는데, 후에 소급 지급을 했으나 6개월 연속 납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5년간 자발적으로 납부한 기금이 자신도 모르게 무효가 되어 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였다.<sup>29</sup> 두 경우 모두 젠더에 따른 돌봄의 역할과 편견적 기부연금제도때문에 많은 여성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간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의 차원을 보여준다.

29. 일하지 못하는 돌봄 기간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연금 적립을 위한 돌봄 크레딧(care credits)의 도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sup>30</sup>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돌봄 책임의 대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노동 참여와 임금에서의 젠더 격차가 커졌으므로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은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지만 나이가 많은 친척 등 다른 형태의 돌봄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30. 비기여연금(non-contributory pensions)은 여성이 노후에 소득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비기여형 및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s)을 통한 연금 적용 확대에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연금 적용 범위의 젠더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sup>28</sup>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iobanu v. Republic of Moldova*, communication No. 104/2016, views of 4 November 2019.

<sup>29</sup>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rujillo Calero v. Ecuador*, communication No. 10/2015, views of 26 March 2018.

<sup>30</sup> Submission by Make Mothers Matter.

비기여연금의 급여 수준은 보통 미미하며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하거나 기여연금 혜택에 대한 부족분을 보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31. 세계적으로, 정년 이상의 세 명 중 한 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지역과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sup>31</sup> 여성은 정규 연금이 없는 사람의 65퍼센트를 차지한다.<sup>32</sup> 이것은 여성의 소득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공식 노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평생, 토지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여성의 재산 축적과 노년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혼인에 따른 재산과 상속 제도에 존재하는 차별은 노년기까지 여성에게 계속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적어도 37개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배우자로부터의 자산 상속권은 동등하지 않다.<sup>33</sup>

33. 법이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관습적인 규칙, 사회와 문화적 규범,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홀로 된 여성 노인은 배제될 수 있다. 이것은 홀로 된 여성 노인, 특히 아이가 없는 홀로 된 여성들을 퇴거와 재산 탈취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주 그들을 가난한 노숙자로 전락시킨다.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서는 상속권 박탈이나 재산 탈취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 왔는데, 이를테면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경찰 내에 피해자 특별 지원팀을 만들고, 의식을 제고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sup>31</sup> ILO,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7–2019: Universal Social Prote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eva, 2017), p. 79.

<sup>32</sup> ILO, *Women at Work Trends 2016* (Geneva, 2016), p. 33.

<sup>33</sup> UN-Women,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19–2020* (New York, 2019), chap. 4.

활동이 그러한 조치에 해당한다.<sup>34</sup> 다른 상황에서 여성 노인은 자녀 또는 남성 가족 구성원을 위해 상속을 포기하도록 기대되거나 압박당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는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에서 도입된 법적 상속 포기 조건 강화와 대기 기간 부과 등이 있다.<sup>35</sup>

34. 이러한 모든 누적된 불이익의 결과로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 이혼, 미혼, 사별이 그렇듯 교차 요인 또한 상황을 악화시킨다.<sup>36</sup> 2019년 유럽연합의 수치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할 확률은 여성이 23.3퍼센트로 남성의 16퍼센트보다 높으며, 룩셈부르크의 13.3퍼센트에서부터 불가리아의 62.4퍼센트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에도 엄청난 격차가 있음이 나타났다.<sup>37</sup>

35. 이것은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가 여성 노인에게는 주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안전, 독립적인 생활, 사생활과 건강에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입과 저축, 재산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 노인은 집을 잃거나, 시설에 수용되거나,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담보대출에 대한 여성 노인의 접근이 떨어지고,<sup>38</sup> 여성 노인이 노숙자가 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가시적이지 않은데, 이는 여성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sup>34</sup>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and UN-Women, *Realizing Women's Rights to Land and Other Productive Resources* (New York and Geneva, 2020), p. 67.

<sup>35</sup> *Ibid.*, p. 58.

<sup>36</sup> Andrew Byrnes, "Poverty, older persons and human rights", in *Research Handbook on Human Rights and Poverty*, Martha F. Davis, Morten Kjaerum and Amanda Lyons, eds. (Edward Elgar Publishing, 2021).

<sup>37</sup> See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

<sup>38</sup> Finance Watch, "A wrinkle in the process: financial inclusion barriers in an ageing Europe"(2021), p. 38.

지내거나 과밀한 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39</sup>

### C. 건강권(Right to health)

36. 공식적인 고용과 관련된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의 배제, 합리적인 가격의 접근하기 쉬운 의료 서비스의 부족 등 일생 축적된 요인들은 여성 노인이 건강과 관련된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를 훼손한다. 더욱이, 여성은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대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여성 노인이 건강관리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장기 요양에 대한 필요가 더 높으며, 요양원 거주자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여성 노인은 또한 치매,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특정 질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37. 장수함에도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외로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부족, 충족되지 않은 의료적 필요 등이 있다.<sup>40</sup>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여성 노인은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사안이다. 계속되는 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성 노인 등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여성이 고령의 친척이나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돌볼 것이라는 사회, 문화적 기대는 공식 또는 비공식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기를 꺼리는 일부의 경우로 이어진다. 늘어난 수명은 여성 노인이 가장 나이가 많은

<sup>39</sup>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Older women’s risk of homelessness: exploring a growing problem”, background paper (April 2019).

<sup>40</sup> Submissions by Dobroe Delo, GRAVIS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Malta.

연령층에 속하는 그들의 부모와 친척에게 제공하는 돌봄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8. 연령과 젠더에서 오는 편견은 건강에 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비롯되는 문제를 심화하며 여성 노인이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적 돌봄과 치료 혜택을 적게 받게 됨을 의미한다.<sup>41</sup>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폐경 후, 생식 및 기타 연령과 관련된 젠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질병은 연구, 학술 연구, 공공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sup>42</sup> 여성 노인을 포함한 여성들은 임상시험에서 불충분하게 대표된다. 일부 질환이 주로 "남성"에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은 여성에게 더 흔한 증상에 대한 지식 부족과 인식 부족, 부정확하고 지연된 진단, 예방 치료에서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심혈관 질환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폐경 이후 그 빈도가 확연하게 늘어난다.<sup>43</sup>

39. 치매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치매를 겪는 여성을 직접 참여시키고 이 질환과 관련된 젠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4</sup> 치매 여성의 필요는 대부분 무시되는데 치매와 관련된 오해와 낙인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본 권리와 자유를 부정당하는 것에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고려할

<sup>41</sup> Joan Chrisler and others, "Ageism can be hazardous to women's health: ageism, sexism, and stereotypes of older women in the healthcare system",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72, No. 1 (2016).

<sup>42</sup>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7, para. 21.

<sup>43</sup> Mark Woodward, "Cardiovascular disease and the female disadvan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16, No. 7 (2019).

<sup>44</sup> Submission by Alzheimers New Zealand.

때 특히 우려된다.

40. 비록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para. 95)에서 인정되지만, 노인의 성적, 생식적 권리문제는 나이듦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의제에서도 여전히 미미하다.<sup>45</sup> 노년기의 성에 대한 지속적인 터부와 오해는 성매개감염의 지속적인 위험을 간과하는 것과 같이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성적인 감염의 지속적인 위험을 간과하는 것과 같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노인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에 대한 정보, 테스트 및 치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상당한 장벽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교육 캠페인에서 무시되고 있다.<sup>46</sup>

41. 많은 나라에서 특정 연령이 지난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질환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노인 여성에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up>47</sup> 아프리카 혈통의 여성, 시골에 사는 여성, 저소득 여성 및 장애가 있는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은 자궁경부암 검진 및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접근의 측면에서 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2. 이것은 또한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여성 및 이러한 그룹에 속하는 여성 노인에게도 해당하는데, 이들의 산부인과 검진율은 낮다. 차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또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성적 특성을 의료 제공자로부터 감추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필요한 치료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

<sup>45</sup> Isabella Aboderi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of older men and women: addressing a policy blind spot", *Reproductive Health Matters*, vol. 22, No. 44 (2014).

<sup>46</sup> Submission by the Centre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retoria.

<sup>47</sup> Mary C. White and others, "Cervical cancer screening and incidence by age: unmet needs near and after the stopping age for screening",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53, No. 3 (2017).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여성은 비만과 당뇨와 같은 빈곤 및 연령과 관련된 질병을 더 많이 보고하며,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sup>48</sup>

#### D. 자주성과 독립성(Autonomy and independence)

43.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엄, 웰빙, 모든 인권의 향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see [A/HRC/30/43](#)). 젠더 불평등, 차별, 연령주의는 가구 형태, 가족생활, 지역사회 참여, 소득 및 자산 관리, 보건 및 돌봄 서비스 접근 등의 측면에서 여성 노인이 삶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방해한다. 일부 여성 노인은 가족 문제, 돈과 자원에 대한 결정, 심지어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뺏긴 것 같다고 말한다.<sup>49</sup> 더욱이, 개인적인 지원, 적절한 주거 및 이동 보조 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노인은 차별적인 상속 재산법 또는 치매와 정신 사회적 장애의 경우 그들의 법적 능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데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see [A/74/186](#), paras. 29–30).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Ⅲ. 여성 노인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 중 'A. 교육과 평생 학습,' 'B. 소득보장, 사회적 보호 및 재산권,' 'C. 건강권,' 'D. 자주성과 독립성'을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76%2F157&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 [elee@asemgac.org](mailto:elee@asemgac.org)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sup>48</sup> Submissions by SAGE and ILGA World.

<sup>49</sup> HelpAge International, "Freedom to decide for ourselves: what older people say about their rights to autonomy and independence, long-term care and palliative care" (London, 2018).